

의안번호	2200002
의 퇴 인	박충권 의원
회 답 일	2024. 6. 24.
추계번호	24B031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항 신설	국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기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항	기본계획 포함 사항 추가 - 초·중등학교 수학·과학 교육 등을 포함한 이공계인력의 육성·지원(제1호) - 이공계 분야의 학생 연구원,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지원(제1호의2 신설) -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제6호의2 신설)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활용(제6호의3 신설)	의무규정
3	안 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제2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등의 보급 확대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과학 교육 방법 고도화 2. 과학기술과 인문, 사회 등 융합 교육 콘텐츠의 개발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을 활용하여 재학생의 수학·과학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환경 개선	의무규정
4	제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제2항 신설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이하 “이공학 진흥”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신설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실태를 파악하고,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제3항)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제4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신설	정부는 박사후연구원(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태 파악,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 근무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부는 같은 항에 따른 표준지침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제3항)	
7	안 제9조의5(이공계 인력의 병역지원) 신설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병역과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9조의6(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신설	정부는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세제 혜택의 제공 2. 구인·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 제공 3. 국내 연구·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4. 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 5.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6. 경력개발 및 교육 지원 7. 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9	안 제12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재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할 수 있도록 이공계인력에 대한 재교육, 재훈련, 경력개발을 실시할 수 있음 ※ 현행 “재교육 및 재훈련”에 “경력개발” 추가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2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등 활용 지원) 신설	정부는 퇴직 또는 퇴직예정 과학기술인, 고경력 과학기술인, 여성 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3.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정부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1	안 제12조의3(일·생활 균형)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인력의 일·생활 균형과 연구·육아 병행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2	안 제15조(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이공계인력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 제도를 혁신하여야 함(제2항) 정부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이공계인력의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의무규정
13	안 제20조의2(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등)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제·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연구인력 육성·지원 체계 구축 2. 기술훈련 및 재교육 지원 3. 연구장려금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3호의 연구장려금 지원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 1. 창업,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2. 해외진출 지원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항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제2항 신설	
3	제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제2항 신설	
4	안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신설	
5	안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지원) 신설	
6	안 제12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등 활용 지원) 신설	
7	안 제12조의3(일·생활 균형) 신설	
8	안 제15조(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제2항 및 제3항 신설	
9	안 제20조의2(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등) 신설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0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항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현 시점에서 향후 확대될 지원사업의 범위·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11	안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병역지원) 신설	
12	안 제9조의6(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신설	
13	안 제12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재훈련)	
14	안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신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 2] 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4년)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항	- 현재 제4차 기본계획('21년~'25년) 진행 중으로, '21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2.1억원 소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포함 사항 확대는 현행 예산으로 집행 가능		
안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병역지원) 신설	사업	개요	'24예산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 운영(1744-404)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교육-병역-취·창업' 연계를 통한 최고 수준의 국방 분야 R&D 인력 양성	600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4631-403)	우수 이공계 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100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4년)		
안 제9조의6(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신설	사업	개요	'24예산
	해외우수과학자유치 (1744-412)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31,817
안 제12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재훈련)	사업	개요	'24예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031-413)	과학기술인 핵심역량 기반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개발·제공 및 경력성장 서비스 제공 등 과학기술 전문인력 재교육을 통해 경력 전문성을 높이고 리더십·공감역량을 강화	18,987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시설지원(R&D) (2231-432)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기관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사무시설, 정보화·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설 유지·보수 및 장비교체사업	2,018
안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신설	사업	개요	'24예산
	뉴미디어활용 과학문화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확산 (1831-416)	대중 접근성이 높은 뉴미디어(유튜브 등)를 활용해 국민 관심도가 높고 시의성이 있는 과학 이슈 및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과학문화 디지털 콘텐츠 제작·확산 지원	1,5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제4항 신설)

- 개정안은 국가에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기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안 제8조제2항 신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아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시행을 위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등의 보급 확대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과학 교육 방법 고도화
 - － 과학기술과 인문, 사회 등 융합 교육 콘텐츠의 개발
 -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을 활용하여 재학생의 수학·과학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환경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과학교사 역량강화, 초·중등 학생의 체험·탐구 활동 지원, 학교밖 체험·탐구 활동 지원 등의 신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

[개정안 제8조제2항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 사업 개요]

- － 과학교사 역량강화: 200백만원 × 5개 전문기관* = 1,000백만원
*전문기관(대학, 기업, 기관 등)이 지닌 특색에 따라 첨단과학기술분야별 역량강화 지원 예정 → 연간 과학교사 1,200명¹⁾ 연수
- － 초·중등 학생의 체험·탐구 활동 지원: 125백만원 × 4개 권역별 기관 = 1,000백만원
학생주도 연구캠프 → 연간 200명 이상 지원(50명×4개 기관)
- － 학교밖 체험·탐구 활동 지원: 125백만원 × 4개 권역별 기관 = 1,000백만원
학교밖 수과학 프로그램 → 연간 1,000명 이상 지원(250명×4개 기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의 조항이 해당 사업들의 근거 조항이 될 수는 있으나,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고,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 외의 다양한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각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1) 전국 과학교사(중등) 약 23,000명 중 5% 수준

□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안 제9조제2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시책의 종류, 대상, 내용 등을 알 수 없음

□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안 제9조의3 신설)

- 개정안은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실태를 파악하고,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한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공계 대학원 학생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물 입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관의 학생인건비 상향 지급 및 최저지급액 보장 등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한 활동 지원 등도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방법,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없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의 실태조사와 유사한 사업으로 이공계 석박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공계 석박사 추적조사 개요]

(조사내용) 국내 이공계 석박사 신규학위 취득자의 일자리현황, 교육이력, 연구활동 등을
2년 주기로 6년간 추적 조사(패널조사)
(실시 연도) 박사 1차 조사('23.9월 완료), 석사 1차 조사('24.6월 완료)
(예산) ('23) 6.5억원(100%집행)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안 제9조의4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 환경 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실태 파악 이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함

□ 고경력 과학기술인등 활용 지원(안 제12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퇴직 또는 퇴직예정 과학기술인, 고경력 과학기술인, 여성 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 －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 －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 －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시니어 과학기술인 경력이음 지원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

[개정안 제12조의2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 사업 개요]

- － (개요) 중소기업과 시니어 과기인을 매칭하여 취업 전 단기 연구원으로 해당 기업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중기부 사업에 연계 지원
 - ※ 산업현장, 기업의 연구환경 및 조직문화 등의 이해도 제고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 중소기업 상호 간 신뢰관계 형성 강화
- － (지원대상) 고급 연구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애로기술 보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 (‘25년) 900백만원 = 50명* × 12백만원** + 기반구축 300백만원

*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록 DB 2,033명(‘23.12월 기준)의 2.5% 수준 및 향후 DB 확대와 참여 인원 증가 예상에 따른 인원수 산정

** 기업부담금을 고려하여 월 2백만원씩 6개월분의 정부지원금 12백만원 산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의 조항이 해당 사업의 근거 조항이 될 수는 있으나,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고,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

재 추진 중인 사업 외에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각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일·생활 균형(안 제12조의3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인력의 일·생활 균형과 연구·육아 병행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0인 미만 민간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과학기술인 고용현황과 신규채용 및 이·퇴직 현황, 보직 현황, 가족친화제도 등을 조사하는 “중소민간기업 대상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현황 조사”를 계획중에 있으나, 2025년 정부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개정안 제12조의3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 사업 개요]

- (1차년도) 1,050백만원 = 3,000개 기관 × 35,000원
 - * 1차년도 표본조사 실시 후 정기적인 조사로 매년 추진 계획
 - * ('23 시범사업) 2,000개 기관 × 38,000원 = 76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향후 해당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경우 개정안의 조항이 해당 사업의 근거 조항이 될 수는 있으나, 반영 여부 및 반영 시점이 불분명하고,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실태조사 사업 외에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등 다양한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각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이공계인력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 제도를 혁신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이공계인력의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경우 그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에 소요될 예산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 국가전략 과학기술 분야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등(안 제20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제·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아래의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시책을 수립·추진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은 연구장려금 지원의 내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기타 연구인력 육성·지원 체계 구축, 기술훈련 및 재교육 지원 등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사업 대상 및 내용을 알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학생 지원 관련 예산 사업 현황

사업명 (내역 또는 내내역사업)	대상	선발기준	지원 방법 및 지원액	2023 실적 (지원 인원 / 지원액)	2024 예산 (백만원)
인재활용확산 지원 (이공계전문 기술인력양성)	이공계 학사 미취업자	(지원대상) 이 공계 대졸 또는 전문대졸 미취 업 자 로 서 , '90.1.1.(만 34 세 이하) 이후 출생자('24. 8 월 졸업요건 충 족자 포함)	연수수당 1인 당 300만원 지 원	학사 1,050명 및 석·박사* 2 8 4 명 /15,828백만 원** *('24년도) 예 산 상황에 따라 석·박사 사업 폐지 **이공계인력 중개센터 예산 포함	2,942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이공계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업·연구역량, 사회적 책임의 식 등	-학부 : ·(대통령과학) 등록금 전액 및 학 업 장 려 금 (2.5백만원/학 기) 등 ·(국가우수) 등 록금 전액 -대학원 : 석사 1.5백만원/월, 박사 2백만원/ 월	8,062명(전원 학부생)/ 52,080백만원	50,74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고자료2] 4대 과학기술원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 현황

구분	연혁	지원대상	2023 실적 (지원인원 / 지원액)	2024 예산 ¹⁾ (백만원)	2024 기준 재원(백만원)
한국 과학기술원	2019년~	석·박사과정 국비 및 KAIST 장학생	·매달 지급 (인건비, 학생 지원경비) ·5,564명 (석사 2,653명, 박사 2,911명) ·103,476백만 원	104,300	·정부출연금: 12,285 (한국과학기술 원 연구운영비 지원-학사사업 비) ·기관사업비: 92,015
광주 과학기술원	2019년~	석·박사과정 국비 장학생	·매달 지급 (인건비, 학생 지원경비) ·941명 (석사 391명, 박사 550명) ·17,505백만 원	18,500	·정부출연금: 3,700 (광주과학기술 원 연구운영비 지원-학사사업 비) ·기관사업비: 14,800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2019년~	석·박사과정 국비 및 DGIST 장학생	·매달 지급 (인건비, 학생 지원경비) ·711명 (석사 297명, 박사 414명) ·17,772백만 원	18,121	·정부출연금: 5,299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 -학사사업비) ·기관사업비: 12,822
울산 과학기술원	2019년~	석·박사과정 국비 및 UNIST 장학생	·매달 지급 (인건비, 학생 지원경비) ·1,655명 (석사 310명, 박사 1,345명) ·33,124백만 원	33,111	·정부출연금: 5,960 (울산과학기술 원 연구운영비 지원-학사사업 비) ·기관사업비: 27,151

주: 1) 추정치로 작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